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73-10

2019년 공중보건기사제도 운영지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ww.moh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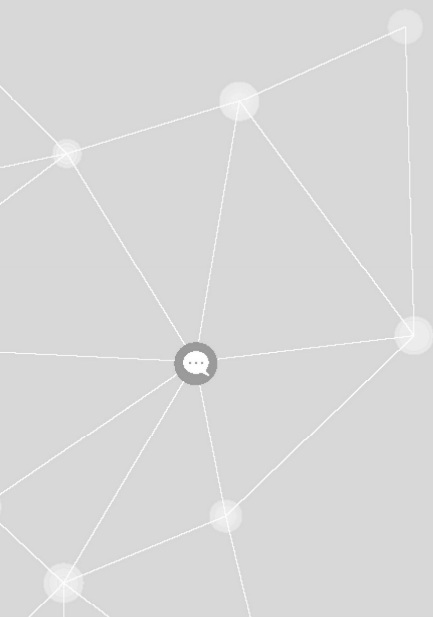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차 례

I.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1
1. 목 적	3
2.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	3
3. 근무지의 변경	15
4.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행정 사항	20
5. 공중보건 의사의 교육	25
6.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	28
7.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32
8.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성적평정	47
9. 대표 공중보건 의사의 활용	49
10. 복무 지도·감독 등	50
11.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행정 사항	57
12.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57
13. 보 칙	58
•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별지서식	59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81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13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17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1

I.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1. 목 적	3
2.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	3
3. 근무지의 변경	15
4.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행정 사항	20
5. 공중보건 의사의 교육	25
6.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	28
7. 공중보건 의사의 복무	32
8.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성적평정	47
9. 대표 공중보건 의사의 활용	49
10. 복무 지도·감독 등	50
11.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행정 사항	57
12.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57
13. 보 칙	58



1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가. 배치기준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지역

(1)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우선배치)

(2) 시(특별시, 광역시 제외) 보건소 및 시 보건지소

※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 인구¹⁾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안산·용인·화성·김해·창원·포항·전주·천안·청주시)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치과 및 한의과의 경우 2019년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각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는 의과 배치를 제외하되, 2019년에 한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1인 이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3) 광역시의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17년부터 단계적 감축

1)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행정안전부, '18.12.31.현재)

나) 배치기관 및 인원

(1) 보건의료원

- ①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전문의 우선 배치)

※ 산부인과 전문의 : 도서지역 분만취약지²⁾ 우선 배치 후 분만취약지 소재 보건의료원 위주 배치

- ② 응급실 운영 시 의과 4인 추가 배치
- ③ 수술실 운영 시 의과 2인 추가 배치
- ④ 도서지역(울릉군)의 경우 의과 3인 추가 배치
- ⑤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 ⑥ 치과는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중 관할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³⁾로 추가 배치함으로써 순회 진료 하도록 한다.

※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치과 공중보건연사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의료원 산하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보건의료원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연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2) 보건소

- ① 군(郡)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광역시 군 소재 보건소는 의과 1인 이내 배치

※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군위군·영암군·하동군·의성군 보건소는 3인 이내 배치한다.

- ② 시(市)지역 보건소에는 의과 2인 이내 배치하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시 소재 보건소는 1인 이내 배치

※ 도서지역 순회진료팀을 운영하는 군산시 보건소는 2인 이내 배치한다.

2) 2019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3) 보건지소 3개소까지는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4개소가 될 경우 1인 배치

- ③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 ④ 치과는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중 관할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로 추가 배치함으로써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 ※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 공중보건의사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 보건소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3) 보건지소

- ① 의과 1인 배치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하여 운영(통합운영 시 차량 및 운영수당 등 지원)하며,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고, 한의과는 한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한다.
 -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1인 이내 배치한다.
 - ※ 도시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 진료 가능하다.
 - ※ 치과는 순회 진료의 편의 및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소 인력을 보건지소에 이동 배치할 수 있다.
 - ※ 보건지소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분포현황 및 진료·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 ※ 시 소재 인구 2만 이상 동 소재 보건지소, 광역시 내 인구 2만 이상 군 소재 보건지소, 혁신도시 소재 보건지소는 의과 배치 제외. 다만, 진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할 보건소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 진료 가능
 - ※ 보건지소 중 주변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배치 예정
- ②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및 농어촌의료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과 2인 이내 배치(수급상황 등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 전문의 우선 배치)하여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게 하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 1인 이내 배치한다.
 - ※ 응급실 운영을 하는 전남 신안군 암태보건지소, 하의보건지소, 전남 완도군 노화보건지소, 전남 진도군 조도보건지소의 경우 의과 1인 이내 추가 배치한다.

※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는 다음 표와 같다.

연륙 되지 않은 도서 지역	인천	강화군 서도면·볼음보건지소 옹진군 대청·덕적·백령·북도·연평·자월·장봉보건지소
	전북	군산시 개야도·어청도보건지소 부안군 위도보건지소
	전남	신안군 가거도·도초·비금·신의·임자·장산·하의·홍도·흑산보건지소 여수시 개도·남면·삼산·연도·초도보건지소 영광군 낙월보건지소 완도군 금당·금일·노화·보길·생일·소안·청산·넙도보건지소 진도군 조도보건지소
	경북	울릉군 북면·서면보건지소
	경남	통영시 사랑·육지·한산보건지소
	제주	제주시 우도·추자보건지소
	기타 의료취약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근무지역 이탈금지지역	

※ 연도된 보건지소는 2개소 당 의과 3인 이내 배치하여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 ③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건 기관 등을 운영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예 :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 관리사업 등) 운영에 공중보건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가)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나) 배치기관 : 국립특수병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권역재활병원, 공립노인 전문요양병원

다) 배치인원

(1) 국립특수병원

- ① 정신병원 : 의과 5인 이내,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 ② 결핵병원 및 소록도병원 : 의과 6인 이내,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2)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① 군 소재 : 의과 6인 이내 배치. 다만, 도서지역은 의과 1인 추가 배치한다.

② 시 소재 :

-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창원[마산]·포항·천안·청주시) 및 경기도 안성·이천·포천·파주시 소재 기관 : 배치제외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소재 기관(원주, 제주시) : 의과 2인 이내 배치

- 인구 15만 이상 30만 미만 시 소재 기관(강릉, 안동, 목포, 순천, 군산, 서산, 충주, 서귀포시) : 의과 3인 이내 배치

-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삼척, 속초, 통영, 김천, 상주, 남원, 공주, 영주) : 의과 5인 이내 배치

※ 경기도 수원·의정부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배치인원은 인근지역 민간 의료기관 및 전문과목별 수급실태, 공중보건 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 지역내 수요 등 고려하여 불가피할 경우 지방의료원에 초과 1인 이내 재량 배치 가능(다만,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우선적으로 배치한 이후 최소 범위내에서 배치 가능)

(3) 권역재활병원 : 재활의료취약지역인 강원·제주 소재 병원에 한하여 의과 1인 이내 배치

(4)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및 통합의료한방병원 : 한의과 1인 이내 배치

※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 다만, '19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 통합의료한방병원의 경우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배치 제외하며, 배치기관도 공중보건 의사 수급 상황에 따라 한시 배치

※ 다른 사유로 공중보건 의사가 1명 이상 배치된 경우, 한의과 배치 제외

(5)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배치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 한약진흥재단

나) 배치인원

(1) 한국한센복지협회 : 의과 1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 의사 수급 상황에 따라 만료자에 대하여 '19년 한시 배치

(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단, 한약진흥재단은 공중 보건 의사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필요 인원 배치

※ 공중보건 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 계획

(3) 이외의 기관은 신규 배치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

가)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1) 배치기관

① 병원선 :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② 이동진료반 :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무료 이동진료반

- ※ 경기도 이동진료반은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치과 및 한의과는 한시 배치
-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진료반 신설시 공중보건의사 배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2) 배치인원

① 병원선 : 의과 2인 이내, 치과 및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② 이동진료반 : 의과, 치과 및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배치할 수 있다.

나)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 의료기관 : 신규 배치 하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 배치기관 : 노숙인무료진료시설

(2) 배치인원 : 배치제외. 다만,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19년 한시 배치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등

(1) 배치기관 :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2) 배치인원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 기관 당 의과 및 치과, 한의과 각 1인 이내 배치

-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계적 축소 배치
- ※ 기관의 인원 내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요에 따라 배치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 : 기관 당 치과, 한의과 각 1인이내 배치

- ※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 배치

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기관

(1) 대상지역 :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대상으로 한다.

(2) 배치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대학병원은 제외, 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응급의료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고 24시간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하 ‘당직의료기관’이라 한다)

(3) 배치인원

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⁴⁾에는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의과 1~2명을 배정하고, 시장·군수는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기관 당 의과 1~2인 이내 배치

※ 배정된 인원을 시·군에서 배치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배치 불가

㉠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이상)
: 의과 1인

㉡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6만미만)
: 의과 2인

㉢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이상)
: 의과 1인

※ 다만, '18.12월말 현재 인구 3만이상 4만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19년에 한하여 1인 이내 추가로 지자체 재량배치 가능

㉣ 당직의료기관이 지정된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인구 3만미만)
: 의과 2인

※ 인구기준(現 6만·3만)은 '20년 이후에 공중보건조사 수급 감소에 따라 하향될 수 있음

4)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0호, 2017.12.27., 일부개정), 부칙 경과 규정 제2조에 의해 응급의료취약지로 유지하던 지역은 2018.12.31. 부로 경과규정 만료로 배치 제외

- 다만, 취약지('19년 신규 취약지 및 한시배정 지역 제외)내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의 수가 배정된 공중보건 의사 수를 초과하는 경우, '19년에 한하여 초과하는 인원만큼 지자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 ②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2개 이상 분포된 지역은 응급의료기관(당직 의료기관 포함)간 거리가 반경 10km이상일 경우 1인 추가 배정한다(다만, 공중보건 의사 수급상황에 따라 '19년 한시 배치).
-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수행 중인 응급의료기관은 신규배치를 제외한다. 다만, 도서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전공의 수련병원, 대학병원급은 제외)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 ④ 이외의 기관은 신규배치하지 않는다.
- ⑤ 해당 기관에 배치 받지 아니한 공중보건 의사를 당직근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한 후 적발된 기관은 익년도부터 2년간 배치를 제한한다.
- ⑥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배치하며,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법정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취약지 의료공백 등을 고려하여 배치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 부당행위로 적발된 기관은 2년간 기준 대비 1명 감축 배치한다.

바)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 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1) 배치기관 :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시·도 역학조사관, 국립검역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2) 배치인원

①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 : 의과 3인 이내, 치과 4인 이내 배치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20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

- ② 시·도 역학조사관 : 시·도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한다.

※ 시·도 정규직 역학조사관의 채용 시, 동 지침에 의한 타 배치기관으로 재량 배치 가능
 ※ 시·도 역학조사관은 한시적으로 배치한다(자체인력 지속 충원 필요하며 단계적 감축 예정. 필요시 '20년부터 배치 제외 가능).

- ③ 국립검역소 : 기관 당 의과 1인 이내 배치. 다만, 인천공항검역소는 의과 2인 추가 배치한다.

-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의과 3인 이내, 치과 1인 이내,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 공중보건조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한시 배치한다.

6) 1)~5)의 배치대상 지역 및 배치인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계획

- (1) 시·도지사는 ‘가’ 항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기관에 대하여 지역별, 기관별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당해 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소요인원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그 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우선순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시·도의 배치계획, 공중보건조사 복무관리 현황, 보수교육실시 현황, 지역보건의료계획, 공중보건조사 활용 현황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도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조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중보건조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배치 및 종사명령

1) 종사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기관을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본인의 희망 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산 분류한다.

다만, 중앙직무교육 과목에 총 3회 이상 지각 또는 조퇴한 자, 중앙직무교육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교육을 방해하는 자는 배치희망지역을 반영하지 않고 배치 할 수 있다.

2) 배 치

- (1)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시·군·구를 지정하고, 기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한다.
- (2) 시·도지사로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할 기관을 지정한다.

3) 기 타

-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동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이 가능한 경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면 즉시 공중

보건 의사관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배치기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라. 배치결과의 보고

- (1) 농어촌의료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 지역을 지정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 또는 중앙 배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배치기준 우선순위를 부여한 배치 계획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배치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근무지의 변경

가. 시·도내에서의 변경

-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해당 시·도내 또는 시·군·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 ①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도서·벽지·접경지역 및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 기간에 산입한다.
- ② 시·도 대표공중보건의사
- ③ 시·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특수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④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시·도지사 이상의 표창 및 일차 의료유공포상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 ※ 시·도내에서의 변경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따르며, 배치기관의 전문과목별 수요에 맞추어 배치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 공중보건의사와 지역 주민과의 불화, 전문과목별 전문의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나 관할 지역의 공중보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내 또는 시·군·구 내에서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자의 이동

- (1) 중앙배치기관 소속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로 종사 명령을 받은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중앙배치기관 대표
- ②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전문 과목 및 해당분야 근무경험자 소요가 있는 경우

다. 시·도·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

- (1) 공중보건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배치 받은 시·도·중앙 배치기관 내에서 복무만료 시까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처분을 받거나 2회 연속으로 근무성적평정결과가 ‘미흡’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벽지·접경 지역의 보건기관으로 변경할 경우로 제한한다.

① 아래의 도서지역 및 병원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배치기관 근무기간에 산입

- 인천광역시 : 옹진군의 백령면·딕적면·자월면·대청면·연평면·북도면 (북도, 장봉도), 강화군의 서도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어청도·개야도, 부안군 위도
- 전라남도 : 영광군의 낙월면, 신안군의 하의면·신의면·흑산면(흑산도, 가거도, 홍도)·도초면·비금면·장산면·임자면, 완도군의 금일읍·노화읍·금당면·청산면·생일면·보길면·소안면, 여수시의 삼산면(거문도, 초도)·남면(금오도, 연도)·화정면(개도), 진도군의 조도면
- 경상북도 : 울릉군
- 경상남도 : 통영시 한산면, 사랑면, 육지면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의 추자면, 우도면

② 전국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⑤ 각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⑥ 시·도·중앙배치기관 내 의료 인력 수요가 없거나, 전문과목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의 경우 변경지역 등을 시·도·중앙배치기관 별로 분류하여 명령하고, 이 때 분류는 시·도·중앙배치기관별 전문과목 소요인원, 본인의 희망, 이동 사유, 근무기간 등을 기초로 하여 분류한다.
- (3)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창장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 배치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예: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행위 및 당직 근무 등)에 종사하여 적발된 자 등 불성실 근무로 행정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도를 달리하여 도서·벽지·접경지역의 보건기관 또는 교정시설에 배치할 수 있다. (복무만료 시까지 이동 제한)

라. 파견근무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나 재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특별한 수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 파견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 (2) 파견근무 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보건의사의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파견근무 기간종료 시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종전 근무기관에 복귀하게 하여야 한다.
- (5) 보고 없이 파견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4 배치 및 근무지 변경에 따른 행정 사항

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 체결 및 해지

- (1)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계약서 작성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2)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의료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3)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되거나 「농어촌의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및 소속

- (1)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2) 공무원증의 표시에 있어 소속은 “보건복지부, 해당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다. 공무원증 등의 발급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종사명령을 받거나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 (2)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공공기관의 경우 배치기관의 장이, 민간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공무원증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은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소속은 “보건복지부”로 하고 근무처를 병기하며 직위는 “공중보건의사”, 직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3)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변경되거나 복무가 만료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즉시 공무원증 및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건강보험증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 건강보험증 재발급 시에는 인근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다.

라. 인사관리부 비치 및 청렴서약서 요구

- (1)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 정보를 작성·비치하고 복무상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사기록관리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

-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이 달라진 경우 지체 없이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를 변경된 근무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별도 요구하여야 한다.

마. 기여금 등의 징수

- (1) 공중보건의사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징수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3) 중앙배치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기여금은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취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본인부담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다.
-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의 장(서울특별시장 포함)이 해당공무원 부담분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 납부절차에 따라 배치기관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배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공무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음

※ 근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배치기관의 장이 근무기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직 또는 만료 예정 증명서

-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 중인 자
-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 (3) 발급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2) 경력 증명서

- (1) 대 상 :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할 자격이 있는 자
-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
- (3) 발급방법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발급

3) 대학원 취학승인서

- (1) 대 상 : 종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다만, 국가 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근무불성실자로 최근 12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이상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았거나 복무연장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2) 발급기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

(3) 발급방법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급

※ 근무시간 내 대학원 강좌로 인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조치 및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2차 적발 시 대학원 승인 취소 및 경고 조치

※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직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 취학 승인 가능

4) 기 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한 기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1)~3)항을 참조하여 발급할 수 있다.

5 공중보건의사의 교육

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 (1) 시·도지사는 「농어촌의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명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접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시·도지사는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도지사 또는 관련기관에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관할 지역 근무자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 직무교육의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6)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각 시·도 및 중앙배치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편성하여 집행한다.

나. 배치 후 직무교육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포함한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학술집담회 포함)을 실시한다. 단, 적정 교육

인원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인근 시·군·구의 직무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반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각종 보건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공중보건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교정시설 등 중앙배치기관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후 직무교육 예산을 자체 편성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3) 중앙배치기관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별도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5) 법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해 실시한 직무교육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 타

- (1)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신규 직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직무교육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즉시 실시하고 보충교육이 필요한 경우 명단을 통보 받은 해당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2) 배치 후 직무교육 연기 사유가 공중보건의사의 병가·공가·특별 휴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간만큼의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신규 직무교육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직무교육 전에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6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

가. 보수지급 기준

1) 보 수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는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 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정근수당, 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별표 공중보건 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하는 기본 보수 이외에 해당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치기관 별로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월 기준액(900천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 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 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중보건 의사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타 복리후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나. 보수의 지급기관

1) 보수 및 복리후생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기타 수당 및 여비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1)항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외의 기타 수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보육수당, 복리후생비(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단체에서 지급한다.

3) 민간 의료기관 보수지급 현황 보고 의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복무상황 및 보수·수당 지급 현황을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 의료기관의 장은 매해 12월 보수 지급 현황을 보고할 때에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4) 보수의 체불에 대한 조치

공중보건기사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여비 등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공중보건기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수의 세부 지급기준

구 분	지급액	비 고
(보수)		
1. 봉 급	• 농어촌의료법시행령(별표)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인봉급표에 준하여 지급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 참조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연수 1년 미만 : 미지급 - 근무연수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근무연수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 지급
3. 진료수당	• 월 20,000원	• 매월지급
4.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연 2회 봉급액의 60%)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
2. 맞춤형 복지제도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기타 수당 및 여비)		
1. 업무활동장려금	•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기준액 900,000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 실적 또는 공중보건기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 에서 지급
2. 초과근무수당등(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어촌 의료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 2019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단가 - 대위 12,622원 - 중위 9,191원
3.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 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4.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 적용)	•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위 표의 <보수> 2. 정근수당 지급액 기준 중 “근무연수”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연가일수 산정시 적용되는 재직기간과는 별개의 개념임(「공무원연급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즉 공중보건의로 편입 전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으로 재직할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라. 호봉의 산정기준 및 호봉승급 기준일

(1) 공중보건의사의 호봉은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초의학 전공자에 한하여 기초의학 이수 경력은 인턴 및 레지던트 이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며, 호봉은 이들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기초의학 전공자”라 함은 각 대학에서 인정한 기초의학 전공자로서 대학원에서 전일제 조교경력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인정

② 위 ①호에 의한 경력합산 호봉은 초임 최고 호봉(대위 3호봉)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호봉승급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한다.

※ 추가 편입자의 호봉 승급일은 복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만 1년이 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달의 1일로 함

7 공중보건기사의 복무

가. 공중보건기사의 의무

1) 공중보건기사로서의 기본 의무

- (1) 공중보건기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중보건업무의 정의(농어촌의료법 제2조) : 농어촌의료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

- (2) 공중보건기사의 성실 종사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법적으로 동일한 의무로서 이는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공공의 이익 증진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이며, 가장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이다.

2) 직장이탈 금지의무

- (1) 공중보건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 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공중보건기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에서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①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 ②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같이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 ③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즉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탈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보건지소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정한 지역에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배치기관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근무지이탈금지 명령서 및 자체근무 지침을 시달하고, 근무 시간, 휴가, 대체휴무, 초과근무수당 등 근무상황관리 및 복무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해당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영리행위 금지의무

- (1)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하 “타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료행위를 한 경우 보수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한다.

다만, 임상훈련을 위해서나 지역 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3) 공중보건 의사는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의료행위(의치·보철 행위 등)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한 진료비를 즉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4)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

공중보건 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하여는 「농어촌의료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공중보건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즉, 진료 거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기록 열람 등의 금지, 진단서 등의 발급의무, 진료기록부 등의 비치 의무, 요양방법 지도의 의무, 변사체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1)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시간

- (1)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 진료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취지와 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근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치기관장은 기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개별적인 유연근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및 휴가 운영, 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및 보수 지급일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할 수 있다.

- (5)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대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불가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정상근무일은 휴무일에 근무한 날로부터 가까운 날로 하되, 대체휴무를 누적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근무기관의 장이 환자 진료 등의 이유로 대체휴무,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근무상황관리

- (1)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시·도, 시·군·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 (2)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근무상황부 사본 포함)을 매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의 장이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 (3) 복무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등의 근무상황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해당 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 (4) 공중보건의사가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직접 신청하여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휴가, 조퇴 등의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가 경위서를 제출할 때에는 복무관리 담당자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사유, 확인 근거, 사유 등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5) 출근, 지각, 조퇴, 외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②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간 시작 이후에 출근하는 것
- ③ 조퇴 : 근무 종료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④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 종료 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

다. 공중보건의사의 휴가

1) 휴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2) 휴가제도의 운영

- (1) 휴가실시의 원칙 :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휴가실시 등에 있어 유의할 점
 -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담당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 지각·조퇴·외출사실의 목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 일수의 연가미공제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연 가

-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 일수	비 고
1년차 (복무개시년도)	산식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수 산식) 11일×해당연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12개월 •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부터 연가 사용 가능
1년차~2년차 (복무개시년도 +1)	12일	
2년차~3년차 (복무개시년도 +2)	14일	
3년차 (복무개시년도 +3)	산식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수 산식) 14일×해당연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12개월

※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관련법령의 개정 시 이에 따른다.

※ 1) 위 비교의 일수 산식을 계산할 때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2) 연가 기산일은 매년 1.1로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편입년도와 복무만료년도의 경우 위 비교 산식에 따라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 계산

- 3)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산정 시 해당 병가 일수를 일수 산식 중 “해당연도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빼고 재산출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상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연간 통상 병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병가 사용이 발생할 경우 일수산식에서 “해당 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사용 병가일수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연가일수 재산출 필요(연가일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병가 사용 시 마다 수시로 연가일수 재산출 요망)
- ※ a)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한 자가 '18.7월 이후 해당 배치기관의 장에게 합산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 배치기관의 장은 상기 요청 시점이 속한 근속기간부터 합산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의 표에 따른 연가 일수)를 적용하여 위 표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가 일수를 부여
- b) 요청 접수 시, 요청인이 제출한 증빙 확인과 함께 관련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사실 확인 필요
- c)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더라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연가일수 조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 (2) 당해 연도의 결근이 없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다음해에 한하여 위 (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자
 - ②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 이상 있는 자
- ※ 연가 가산은 1년 미만 근무한 자(1년차 공중보건의사 해당)에게 적용되지 않음(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3) 근무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위 (1)항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배치기관 장의 허가를 받은 지참·조퇴 및 외출, 반일 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 (4)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 (5) 휴가를 원하는 공중보건 의사는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법정연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해의 복무만료예정자는 결근 일수만큼 연장 근무하여야 한다.
- (7)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의 연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해당 근무기간의 전체 연가일수에 연가를 1일 가산할 수 있다.
- (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기산일을 기준으로 복무만료기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단, 이월·저축하는 연가 일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며, 보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 의사제도운영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는 장기연가 사용을 제한한다.

- ①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②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병 가

(1) 공중보건의사의 병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사 유	기 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무복무 기간 중 30일 미만 범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복무기간 중 통산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의무복무 기간 중 180일 범위 내	

(2) 연차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차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②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 ③ 연차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병가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3) 공무상 병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사실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4)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료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 가

(1) 공중보건기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일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는 근무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④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결핵검진 또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을 때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일반검진 4시간이내
- ⑥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⑦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이내)
- ⑧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한함)을 이수하고자 할 때(연차별 2회, 각 2일 이내 인정)
- ⑨ 해외학회에 연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로 등록되어 참가하고자 할 때 (복무기간 중 2회 이내, 포스터 발표는 제2저자 이내)
※ 총 공가일수는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로 함. 공가 및 해외여행 승인 신청 시, 논문 초록, 학회 프로그램 및 항공권 등 증빙서류 첨부
- ⑩ 공중보건기사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참가 할 때
- ⑪ 수련의,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복무기간 중 2일 이내)

- (2)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공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당일에 1일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6) 특별 휴가

(1) 경조사휴가

- ①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② 근무지 이탈금지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조사휴가는 도서를 운항하는 가장 빠른 교통편의 최소 승선시간이 편도 2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왕복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당일에 1일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 위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 시마다 즉시 시행한다.

- ③ 「민법」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하고 양자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재해구호휴가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3)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차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1) 국외여행의 승인대상 :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대상 및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회의(학회) : 해당기관의 국제회의(학회) 계획서 또는 초청장
- ② 견학 연수(외국의사국가고시 응시포함) 또는 문화교류 :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 ③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치료 : 의료법에 의한 진단서
- ④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 첨부서류 없음
- ⑤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출국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⑥ ①에서 ⑤의 승인대상별 첨부 서류는 예시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가능

2)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②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나 본인이 학회발표자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 단, 신혼여행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라도 승인 가능
-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연가 또는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휴무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범위 내에서 승인
※ 단, 대체휴무의 누적사용 불가
- ④ 국가 공무원으로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 다만, 배우자 또는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외적인 허용 사유로 인정하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어 국외여행 가능

3)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신청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② 자필서약서(국외여행기간동안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내용, 별지 제6호 서식) 1부

4)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허가추천서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별지 제7호 서식(동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이용 가능)에 의한다.

5) 공중보건의사의 국외여행 승인권자는 아래와 같다.

기관별 공중보건기사 국외여행 승인권자 현황

승인권자	대 상 기 관	비 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	보건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각 시·도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각 시·도 지방의료원 각 시·도 적십자병원 각 시·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취약지역병원 각 시·도 사회복지시설(중앙배치기관 제외) 기타 중앙배치기관장이 승인하지 않는 시·도지사 직접 배치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 (※ 각 근무기관 에서는 「공중보건기사 국외 여행승인(추천)서 (별지 12호 서식)를 보건의료원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
시·도 지사	각 시·도 역학조사반, 병원선, 이동진료반 한국한센복지협회	※ 각 근무기관에서는 「공중보건기사 국외 여행승인(추천)서 (별지 12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 기관의 장	법무부(교정시설 등),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질병관리본부, 각 검역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약진흥재단 서울역 다시서기 무료진료소, 대한불교조계종 영등포 보현의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권을 배치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마. 업무의 인계·인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기사가 근무지역을 변경하거나 복무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문서, 물품, 약품, 예산 등)을 반드시 간호사,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원 또는 기타 보건요원 1명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하고, 보건소장에게 업무 인계·인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중보건기사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담당자 간에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도서지역의 보건지소 근무자는 복무가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임 공중보건기사가 부임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근무지를 이동하여야 한다.

8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

- (1) 공중보건의사의 근무능력향상, 공정한 인사관리,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 (2)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성적평정(이하 “평정”이라 함)은 피 평정자의 업무 난이도, 업무량, 완성도, 업무처리 적시성 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할 것
 - ② 평정은 의사종별, 배출 연도의 구분 없이 광역시·도에서 직접 관리중인 자는 광역시·도지사가,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근무기관)장이, 시·군·자치구지역 근무자는 시·군·자치구 보건소장이 하되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등의 근무자는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평정하여 시·군·자치구에 보고할 것
 - ③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 (3) 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정자는 각 시·군·자치구 보건소장 또는 배치기관장으로 하는 등 기관별 평정자와 확인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정자의 평정내용을 참조하여 확인자가 조정 결정한 개인별 근무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
 -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보건소장

- ② 의료기관(민간포함), 보건단체 및 복지시설
 - 평정자 : 소관 과(팀)장
 - 확인자 : 병원장, 단체장 또는 시설장
- ③ 중앙배치기관
 - 평정자 : 소관 과(팀, 단)장
 - 확인자 : 근무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4) 평정은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 연도 1월부터 6월말까지, 7월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최초로 종사명령을 받은 공중보건기사에 대해서는 종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5) 상·하반기 평정서는 평정기관에 비치하되,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근무상황보고(동법 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의 근무실적평가란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의 총점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평정등급 및 평점점수를 표기하되, 공중보건기사 종별·배출연도 구분없이 절대평가한다. 다만, 근무평정기간 중 잦은 연·공·병가(특별휴가 제외) 사용으로 월 실근무일이 10일 미만자, 주의 등 1회 이상 불성실 공중보건기사 처분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탁월’ 또는 ‘우수’ 평정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 (6) 평정결과는 공중보건기사의 근무지역 변경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9 대표 공중보건역사의 활용

1) 대표 공중보건역사의 선발 및 종류

2·3년차 공중보건역사로서 성실하고 지도력을 가진 자 중 관내 공중보건역사의 추천을 받은 3명(의사 1인, 치과의사 1인, 한의사 1인)을 대표 공중보건역사로 활용하며, 대표 공중보건역사는 전국 대표, 시·도 대표, 중앙배치기관 대표, 시·군·구 대표로 한다.

※ 각 과별 대표단 인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대표 공중보건역사 역할

-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공중보건역사 직무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지원
- (2) 관내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역사에 대한 자율지도
- (3) 관내 공중보건역사의 성실한 복무자세 유도 및 고충사항처리, 필요한 정보제공과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소집
- (4)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 등의 업무수행

3) 업무일지 작성

대표공중보건역사는 필요시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복무 지도·감독 등

1) 복무상황 점검 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관리 실태 또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실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복무관리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해 필요시 병무청과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연1회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및 의무이행 여부, 보수등 지급실태 등에 관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복무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에는 관내 민간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 및 보수 등 지급실태 점검결과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복무연장이나 병역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사유, 법령 등에서 정한 보수지급 기준 등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6) 감독권자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장 이탈이나 기타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현역병 입대 등)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7)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권자를 주의 등 문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공중보건역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
- (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 및 보수지급 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역사 배치를 취소하고 앞으로도 공중보건역사의 배치를 제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보건역사 근무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의 협조 하에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배치기관의 장의 지도·감독 책임

- (1) 공중보건역사가 배치된 병원·배치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역사에 대한 1차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 (2) 응급의료기관 등(민간 의료기관) 배상 책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공중보건역사를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하기 전에, 공중보건역사 과실과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장의 동의서를 먼저 징구하여야 한다.
 - ※ 배치 전 배상책임 동의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지역이 발견될 경우, 필요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공중보건역사 배치 감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3) 배치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역사의 직장이탈, 타 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요구 등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복무여건 개선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등 공중보건의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치기관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3) 근무 복장

환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간 중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근무상황 보고

- (1) 공중보건의를 배치받은 민간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현황을 매 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민간기관의 장이 복무상황 및 보수지급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
- (2) 병원장과 그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의 반기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어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4) 시·도지사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보수지급 현황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평가를 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어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1) 공중보건 업무관련

불성실사항	처분	처분기관
○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시킨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1차 주의 조치 • 2차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정 지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 경고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의 2회 - 주의 1회, 경고 1회 - 견책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 부터 3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12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누적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 경고이상 2회 - 감봉이상 1회 * 일반 형사범죄 관련 처분도 포함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 부터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근무지 변경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 경고조치,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이탈시간 5배수 계산 후 8시간을 연장근무 일수 1일로 계산) * 다만, 당사자 희망에 따라 상기 연장 근무 일수에서 해당 근속기간 잔여 연가 공제 가능(잔여 연가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서 공제 가능)	• (연가일수 공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복무기간 연장조치) 보건복지부장관
	• 연차별 근속기간의 통산 무단이탈 일수 1일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불성실사항	처 분	처분기관
○ 의료행위(의치·보철 등)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12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근무지 변경 가능 (도서지역 등으로 전출)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 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당직근무 등) 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처분이 결정된 날의 익월부터 복무만료일까지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이내	• 경고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이탈일수의 5배수 기간 연장근무	
	• 무단이탈 일수 1일 마다 6개월 동안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중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이탈금지 선포지역), 무단결근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8일 이상	• 신분박탈,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병역법에 따른 조치), 병무청장에게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직장에서 무단이탈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2018. 8. 13 부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부터 적용 (2018.8.13.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처분기준 적용)

(2) 일반 형사범죄 등 관련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처분한다.

징계 종류		신분상 효력	보수상 효력	비고
경징계	견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승급제한 (금품관련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시 각각 6개월 가산)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미지급 • (수당 등) 전액 지급 • (업무활동장려금) 3개월 지급중지 	
	감봉 (1~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처분기간(1~3월) 중 1/3 감액 • 감봉처분기간+12개월 승급제한 (금품관련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시 각각 6개월 가산) • (가족수당, 진료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처분기간(1~3월) 동안 1/3 감액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처분 받은 경우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전액 지급 • (업무활동장려금) 6개월 지급중지 	
중징계	정직 (1~3월)	처분기간(1~3월)은 신분은 보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처분기간(1~3월) 중 전액삭감 • 정직처분기간+18개월 승급제한 (금품관련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시 각각 6개월 가산) • (가족수당) 미지급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정직처분 받은 경우 미지급 • (진료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설날·추석)현재 정직 중인 경우 미지급 • (업무활동장려금) 6개월 지급중지 	복무 연장 (1~3월)

징계 종류	신분상 효력	보수상 효력	비고
해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자는 1/8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	신분 상실
파면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하고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액1/2 감액 (재직기간 5년미만인자는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	신분 상실

(3) 행정사항

- 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기록부 및 공중보건의사 관리 프로그램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이 제 (1)항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처분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처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거나, 중앙배치기관의 경우 직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의무복무 만료자에 대한 행정 사항

1) 의무복무 만료자 명단의 작성 및 통보

- (1)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성실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의무복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기타 병무사항 안내 등

1)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 (1)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근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2)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에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승인서를 첨부하여 1부는 여권발급신청 시에, 나머지 1부는 출국 시에 제출한다.

2) 복무만료자의 예비군 편성확인

복무만료 후 예비군 편성여부를 국방부 또는 거주지 예비군 중대에 확인한다.

13 보 칙

1) 위임

- (1) 법령 또는 이 지침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역사의 이동 및 배치를 제외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및 복무감독 등 제반관리는 배치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중보건기사제도 운영지침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서	61
[별지 제2호 서식] 경력증명서	62
[별지 제3호 서식] 기타 증명서()	63
[별지 제4호 서식] 취학승인서	64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기사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65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행자필서약서	66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기사 근무성적평정서	67
[별지 제8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68
[별지 제9호 서식]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69
[별지 제10호 서식] 20 년 민간기관등 공중보건기사 복무 및 보수등 지급 현황	70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71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기사 국외여행 승인(추천)서	72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 신청서	73
[별지 제14호 서식] 경력증명신청서	74
[별지 제15호 서식] 기타 증명신청서	75
[별지 제16호 서식] 취학승인신청서	76
[별지 제17호 서식] 청렴서약서	77
[별지 제18호 서식] 동의서	78
[별지 제19호 서식] 공중보건기사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서	79

[별지 제1호 서식]

재 직(만료 예정) 증 명 서

성 명	국문 : (한문 :)	생년월일		
근 무 처				
주 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 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와 같이 복무 중인 자임을 증명함.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 경력사항

종 별	성 명	생년월일	근무지역	근무기간
연락처	전화 :		팩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보건 의사로 근무 하였음을 증명함.

20

00도지사 (시장), 00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 용 도 :

[별지 제4호 서식]

취 학 승 인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위 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무중인 공중보건기사로서 20 년도 대학원 취학을 승인함.

20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근무기관	비 고

2. 주 소 :

3. 여행기간 :

3. 여 행 국 :

4. 여행목적 :

5. 법정휴가 사용 예정 내역 : 일(연가 공개 특별휴가 병가 경조(청원)휴가 대체휴무)

「병역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보건 의사 국외여행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귀하

첨 부 : 1. 자필 서약서 1부

2. 기타 참고서류

[별지 제6호 서식]

국외여행자필서약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직위	근무기관	비고

2. 주소 :

3. 여행기간 :

3. 여행국 :

4. 여행목적 :

본인은 상기 국외여행을 다녀오에 있어, 여행기간동안 공중보건조사로서의 본분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자필 서약합니다.

20 . .

신청인 : (서명)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중앙배치기관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병역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국내</td> <td colspan="4"></td> </tr> <tr> <td>국외</td> <td colspan="4"></td> </tr> </table>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병역사항 (허가기관 기재사항)				대조										
				확인										
최초 허가 신청	당초 허가번호	제 호												
	여행기간	. . . ~ . . . (년 월 일간)												
	여행국명	여행목적												
국외체류 중인 자 기간연장 허가 신청	재외공관장 확인 :		(인)	접수 및 확인번호										
	최초 허가사항	여행 목적		여행국명										
		병무청 허가번호		출국 연월일										
		병무청 허가기간		20 . . . ~ 20 . . . (일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제목적		체제국명										
기간연장 요청기간		20 . . . ~ 20 . . . (일간)												
국내 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소	전화번호	E-mail									

「병역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20 년 민간기관등 공중보건기사 복무 및 보수등 지급 현황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의사수 (명)	계			간호사 수			계			
	자체 확보의사			병 실 수	기관 현황 (건)		외래			
	공중보건 의사			병 상 수			입원			
공중보건 의사 배치근거	예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급의료기관(05.6.20일자) 운영 승인 관련 문서(관련 문서 등 기재) ※ 공중보건기사 배치근거가 소멸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									

2. 공중보건기사 관리 현황

성명	생년월일	배출년도 (호봉)	근무상황①			월별 총계	보수등 지급상황②							기타 ③	보수등 지급 현황 법령 준수 여부				
			연가 일수	병가 일수	근무지 이탈등 불성실 근무일수		총 계	봉 급	진 료 수 당	정 근 수 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업무 활동 장려금			초과근 무수당 등	기타 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등)		
																		00월	00월

가. 근무상황① : 공중보건기사 연차별 사용한 연가·병가, 불성실 근무일수 기재
 나. 보수등 지급현황②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수등 항목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다. 기타③ : 보수등 지급현황②)외에 추가로 지급한 수당등 총액
 라. 총 계 : 보수등 지급현황②)+ 기타③)
 마. 보수등 지급현황 법령준수 여부 : 법령상 보수등 범위를 준수한 경우 “○”로, 법령상 보수등 범위를 위반한 경우 “x”로 표기

20 . .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공중보건조사 국외여행 승인(추천)서

1. 인적사항

- 추천대상자 : (-)
- 직 위 :
- 근 무 기 관 :

상기자는 20 년 월 일 배치된 이후 현재 ()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해외여행을 추천합니다.

- 다 음 -

- 여행기간 :
- 여행지역 :
- 여행목적 :

20 . . .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재직(만료 예정) 증명 신청서

성명	국문 : (한문 :)	생년월일	
근무처			
주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도 (발행 부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와 같이 복무(만료 예정)중인 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경력 증명 신청서

○ 신청인 경력사항

종별	성명	생년월일	근무 지역	근무기간	용도 (신청 부수)
연락처	전화:		팩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보건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기타 증명신청서

성명	국문 : (한문 :)	생년월일	
근무처			
주소		전화	
		팩스	
의무복무기간			
용도 (신청 부수)			

()
을(를) 신청합니다.

20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이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취학승인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 취학대학원 :

본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공중보건기사로서 20 년도 대학원 취학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OO도지사 (시장), OO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앙배치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청 렬 서 약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근 무 지 :
- 의무복무기간 :

본인은 공중보건 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바, 근무기간 중 공중보건업무 외 근무 및 의약품 리베이트 등 부정을 척결하고 청렴하게 근무할 것을 서약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확인하였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중보건 의사 성 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병 원 명 :
- 소 재 지 :

본인은 응급의료기관 기능수행을 위해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민간 병원장으로, 본 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동 배상 책임을 전액 부담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병원장 성 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공중보건의사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합니다.

다 음

이탈금지명령 대상자

소 속	면허종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이탈금지 지역 :

- 근무시간 이후라도 부득이 ○○○ 지역을 이탈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으로 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령발효 시기 : 20○○년 ○○월 ○○보건(지)소 배치일로 부터 별도의 명령 해제시까지

기타 사항(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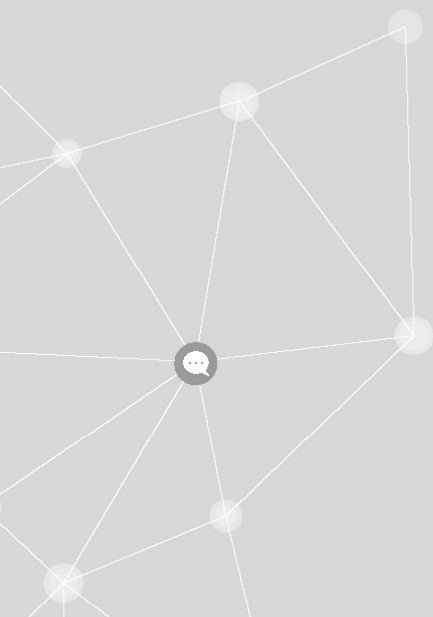
- 근무지역 이탈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사항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음

2000. 0 . 00 .

○ ○ 시장 · 군수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규칙	83
---	----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1장 총칙 <개정 2012.10.22.></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보건조사”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조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공중보건업무”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를 말한다.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장 공중보건기사 <개정 2012.10.22.></p> <p>제3조(공중보건기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11></p> <p>② 공중보건기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p> <p>[전문개정 2012.10.22]</p> <p>제3조의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보건기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조 삭제 <2003.3.12></p> <p>제3조 삭제 <2003.3.12></p>	<p>제2조 삭제 <2003.3.12></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4조(공중보건역사의 명단 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역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역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p>	<p>제4조(직무교육 소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역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공중보건역사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제6조(공중보건역사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역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은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p>	<p>제3조(공중보건역사의 명단통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역사의 명단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7조(공중보건역사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역사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공중보건역사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1. 보건행정과정: 보건사회정책, 보건의료 관계법령, 지역사회</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전문개정 2013.1.22]</p> <p>제7조(공중보건사의 인사관리부비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중보건사를 배치한 기관 또는 시설(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공중보건사의 인사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중보건사의 신상변동·근무상황과 그 밖에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p> <p>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사의 근무 및 관리 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2]</p>	<p>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 관련 전문의학, 그 밖에 보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p> <p>2. 임상실습과정: 환자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p> <p>③ 공중보건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 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상실습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보건사가 전문의나 인턴과정 수료자인 경우 2. 의료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p>[전문개정 2013.1.23]</p> <p>제8조(공중보건사의 직무교육기관)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행정과정: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무원교육원 2. 임상실습과정: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치과 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교육할 수 있다.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한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5조의2(공중보건직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직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병원”이라 한다) 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직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공공</p>	<p>제6조(공중보건직의 배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직이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군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남은 인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2]</p> <p>제6조의2(공중보건직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법 제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선 및 이동진료반 2.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 	<p>[전문개정 2013.1.23]</p> <p>제10조(공중보건직의 배치결과 통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직의 근무지역·근무기관 또는 시설 지정 등 배치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3.1.23]</p> <p>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직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p> <p>[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병원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있는 기관 및 시설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p>	<p>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p> <p>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p> <p>[전문개정 2013.1.22]</p>	<p>제11조(근무지역 등의 변경요청 등) ①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시·도 간 근무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근무지역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 변경 결과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6조의2(파견근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중보건 의사를 다른 지역·기관 또는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 내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또는 배치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5.29></p> <p>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 의사에 대하여는</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제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p>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p>		<p>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1.23]</p>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p> <p>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제9조(공중보건의사의 복무) ①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의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여받은 공중보건의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의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p>	<p>제9조(근무지역 이탈보고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중보건의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p>제14조(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영 제9조에 따른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공중보건의사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무기간 연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p> <p>⑦ 공중보건의사가 「병역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공의(專攻醫) 수련이 허가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p> <p>⑧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해당 공중보건의사에게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2]</p> <p>제11조(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 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2]</p>	<p>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에 따라 공</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①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른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경우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p>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서 교육성적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p> <p>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2]</p> <p>제10조(신분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제9조의2에 따라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p> <p>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p>	<p>제9조의2 삭제 <2013.1.22></p> <p>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22]</p>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3></p> <p>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2조(공중보건학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학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공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공중보건학의 수련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3조 삭제 <2000.1.12></p> <p>제14조(복무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p>	<p>제12조 삭제 <1997.12.31></p> <p>제13조 삭제 <1992.6.1></p>	<p>제16조(공중보건학의 수련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p> <p>② 법 제12조에 따른 전공의 수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공의 수련허가 신청서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발행한 전공의 시험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근무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기사의 복무에 관하여 관할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기사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4조의2 삭제 <2014.1.28></p> <p>제14조의3(공중보건기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기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기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기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상담공무원 <개정 2012.10.22.></p> <p>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p> <p>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p>		<p>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p>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p> <p>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③ 군수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3]</p> <p>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6조(직무교육기간 중의 보수지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본조신설 2012.2.23]</p> <p>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이탈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관할구역을 이탈한 경우 <p>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1.23]</p> <p>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우선 배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p>[전문개정 2013.1.23]</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종사명령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단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직장 이탈 금지 등 복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분 상실 및 박탈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조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복무 감독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에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보수교육의 기간·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사무</p> <p>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무 <p>[전문개정 2013.1.22]</p>	<p>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전문개정 2012.10.22]</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개조(分娩介助)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p>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p>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18조 삭제 <2012.2.23></p> <p>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나. 「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p>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2]</p>	<p>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며, 관할구역 이탈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제21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p> <p>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p>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
<p>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2조(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p> <p>① 국가·도 및 특별자치도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비와 부대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2 이내로 하고, 도비보조금(道費補助金)은 설치비와 부대비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1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p> <p>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 [전문개정 2012.10.22]</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p> <p>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p> <p>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2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과정 등)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p> <p>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7.1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론교육과정: 지역사회보건관리, 모자건강,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그 밖에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 3. 현지실습과정: 지역사회 적응 방법,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 방법, 그 밖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지실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별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각 교육과정의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이</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5조(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0.22]</p>		<p>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수료등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수료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25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 등) ①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과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진료 전</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4장 보칙 <개정 2012.10.22.></p> <p>제26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배치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의 일부를 민간 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2.10.22]</p>		<p>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1.23]</p> <p>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 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매 반기의 관할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에 따른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그</p>	<p>을 때 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을 때 만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0조(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32조(운영상황 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 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p> <p>제6조(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주소·성명 및 연 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소 집연기원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1회에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 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p>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집연기원 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기 기간이 지나거나 연기 사유가 소 멸된 후 다시 직무교육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제10조(근무상황 평가보고) ①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 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반기 종 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전문개정 2013.1.23]</p> <p>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016.5.29., 법률 제14183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0호</p>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1.2., 보건복지부령 제531호</p>
	<p>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 매 반 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유지·관리)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를 갖 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과 소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p>	<p>제29조(진료기록부 등) ① 영 제15 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 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 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p>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별표] 공중보건역사의 보수기준 115

[별표] <개정 2013.1.22.>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 (제8조 관련)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근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사람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중위 3호봉
	인턴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레지던트 수련 1년 이수자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레지던트 수련 2년 이수자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레지던트 수련 3년 이수자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 119

[별표] 〈신설 2013.1.23.〉

보건진료소 시설 및 의료장비 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진료활동: 진료실, 대기공간, 화장실, 현관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나. 숙소: 안방, 방, 거실, 식당 및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

2. 의료장비기준

자동혈압계, 자동제세동기, 약품포장기, 냉장고, 체성분 분석기, 청진기(성인용, 소아용), 혈압계(수은주형), 검안검·검이경, 고막체온계, 자동 신장/체중계, 드레싱 카 및 드레싱세트, 진찰대, 휠체어, 자외선소독기, 자불소독기, 혈당측정기, 약장, 환자용 침대, 방문진료세트, 텔레비전, 프로젝터 및 스크린, 삼색 식별기, 색맹 검사표, 시력표, 교육용 모형, 일산화탄소 측정기,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을 위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사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기준과 의료장비기준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한 안내 지침에 따른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 1] 삭제 (2003.3.12.)	123
[별지 제2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명단 통보	123
[별지 제3호 서식]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124
[별지 제4호 서식]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125
[별지 제5호 서식]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126
[별지 제6호 서식]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127
[별지 제7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 결과 보고	128
[별지 제8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배치결과 통보	129
[별지 제9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근무지역 시·도 간 변경 요청	130
[별지 제10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근무지역 등 변경 결과 보고	131
[별지 제11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인사관리부	132
[별지 제12호 서식] 직무교육 불응 및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134
[별지 제13호 서식] 공중보건 의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	135
[별지 제14호 서식] 전공의 수련 허가 신청서	136
[별지 제15호 서식]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137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12.2.23.)	138
[별지 제17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138
[별지 제18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139
[별지 제19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등록원서	140
[별지 제20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수료증	141
[별지 제21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수료증 발급대장	142
[별지 제22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 보고	143
[별지 제23호 서식]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144
[별지 제24호 서식] ()년도 보건진료소()분기, ()반기 운영상황 보고서	145
[별지 제25호 서식] 진료기록부	147
[별지 제26호 서식] 조산기록부	148
[별지 제27호 서식]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150
[별지 제28호 서식] 의료장비 및 비품 대장	151
[별지 제29호 서식] 월별 의약품 출납대장	152

[서식 1] 삭제 (2003.3.12.)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기사 명단 통보

일련번호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출신학교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업무종사명령서

계 급:	군 번:
면허종류:	성 명:
근무지역(기관·시설):	생년월일:
근무기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통보

시·도 별	성 명	면허종류	전문과목	출신학교	비 고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1.23.>

직무교육 소집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종류			
소집일시	년 월 일 시		
교육기간	부터 까지(일간)		
소집장소			
<p>「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장관 직인</p>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3.1.23.>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처리기간
			1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면허종류		배치지역	
소집일시 및 장소			
연기사유 및 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위원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기사 직무교육 결과 보고

일련번호	성 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성 적		
				계	학습 또는 실습 평점	근태평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기사 배치결과 통보

일련번호	계급	군번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및 면허 번호	주소	출신학교	배치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기사 근무지역 등 변경 결과 보고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배출연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근무기관	근무기간	근무기관	변경일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조사 인사관리부

(양쪽)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주소	출신학교			
면허종류	면허번호	복무		처음
		기간		연장
계급	군번			
부 무 상 황				
기간	근무지역 및 기관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상황	비고
	부터	까지		

297mm×210mm(백상지 120g/㎡)

(뒤쪽)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연장·해지사항				복무관리 처분사항				
연월일	구분	기간		기관장	연월일	처분사항	사유	기관명
		부터	까지					
(그 밖의 특기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3.1.23.>

직무교육 불응 및 근무지역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 보고

배출연도	성명	생년월일	배치지역 또는 근무기관	불성실 근무사항	불성실 근무기간 (일수)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1.23.>

공중보건기사 근무상황 평가 보고

배출 연도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근 무 상 황			근무실적 평 가	비 고
				연기일수	병가일수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일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3.1.23.>

전공의 수련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도 : 3일 보건복지부 : 5일
성명		생년월일	
계급		군번	
면허종별		면허번호	
종사기간		배치기관	
주소		전화번호	
수련병원명		전화번호	
수련병원소재지			
수련기간	부터	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공의 수련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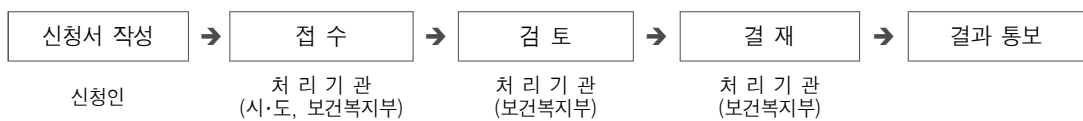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전공의 시험 합격 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소 설치상황 보고

군별	면별	설치 연월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성명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	관할지역의 리·동명	면적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12.2.23.>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보고

군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주 소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 소집통지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면허종류		면허번호	
직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간	부터 까지
등록일시		등록장소	
<p>귀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대상자로 선발하고 위와 같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소집을 통지하오니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필요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보건복지부장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직인</p> </div> </div>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귀하</p>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3.1.23.>

제 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결과 보고

성 명	생년월일	직 무 교 육 성 적				
		총 점	이론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현지실습과정	태 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결과 보고

시·군명	교육대상 인원	교육받은 인원	교육기간	교육장소	불참자		
					소속진료소명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7.11.2.>

()년도 보건진료소 ()분기 ()반기 운영상황 보고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년도 ()분기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건진료소명	_____ 보건진료소
--------	-------------

1. 일반상황

인구	총인구	_____명				
	0 - 4세	_____명	35 - 39세	_____명		
	5 - 9세	_____명	40 - 44세	_____명		
	10 - 14세	_____명	45 - 49세	_____명		
	15 - 19세	_____명	50 - 54세	_____명		
	20 - 24세	_____명	55 - 59세	_____명		
	25 - 29세	_____명	60 - 64세	_____명		
	30 - 34세	_____명	65세 이상	_____명		
인구 변동	출생	_____명	전입	_____명		
	사망	_____명	전출	_____명		
가구	총 가구 수	_____가구	1인 가구 수	_____가구	다문화가구 수	_____가구

2. 활동상황

(단위: 명, 건)

영역	내 용	인원 및 횟수			영역	내 용	인원 및 횟수				
		내소	방문	계			내소	방문	계		
건강 증진 관리	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고 혈압	혈압측정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정신보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상담교육 및 투약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재활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당뇨 병	혈당 측정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구강보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상담교육 및 투약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전화상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고 지 혈 증	콜레 스테롤 측정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집단보건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환자 상담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결핵관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비만	BMI 측정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금연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비만 상담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절주(알코올 중독 관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뇌졸 중	상담교육 및 투약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영양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대상자 등록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건강 증진 관리	신체활동 (운동실천 지도)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치매 관리 사업	조기검진사업 (선별검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암 환자 관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치료관리비 지원연계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모자보건사업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치매상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노인건강 관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치매예방 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관절염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투약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치매가족모임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진찰 및 투약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그 밖의 사업 (물품지원 등)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검사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기 타							
일차 진료	진료의뢰 및 환자이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일반질환 상담교육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방문진료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인원 <u> </u> 명, 횟수 <u> </u> 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3.1.23.>

진료기록부

No. _____

진료일	년 월 일	주 소				
요양기관 번호		요양기관 명칭	사업장 기호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증 번호	체중	키		
진료받은 사람 성명		진료받은 사람 주민번호	성별	연령	세	
가족의 병력		본인의 과거병력				
진찰소견 및 상담						
【상병명】 주상병명: 부상병명:						
【처방】						
약 품 명			용량	횟수	투약일수	계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13.1.23.>

조산기록부

(제1쪽)

등록번호 _____

보건진료소명 _____

등록일 _____

담당자 성명 _____

임산부 성명				생년월일				교육정도		
남편 성명				직업				교육정도		
1. 임신력										
임신 횟수	유산 횟수		사산 횟수	전번 임신				현재 자녀 수		
	자연	인공		유산	사산	정상	비정상			
2. 질병력										
심장병	고혈압	신장병	당뇨병	결핵	성병	수술(명)	기타			
3. 초진 상담										
마지막 월경일		분만 예정일		매독검사		혈액형		임신 전 체중(kg)		
년	월	일	년	월	일					
4. 산전관리										
진찰 연월일	임신 기간	체중 (kg)	혈압 (mmHg)	혈색소 (g/ml)	소변		부종	태아 심장박동수 (분)	상담 및 처치 내용	방문 약속일
					단백	당				

210mm×297mm[백상지 120g/㎡]

II.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규칙

(제2쪽)

5. 분만상태													
분만 일시	년 월 일						남 여	생존, 사망(시 분)		사산, 유산(개월)		키(cm): 머리둘레(cm): 몸무게(kg):	
	아기 나온 시각 시 분							기형		유() 무()			
	태반 나온 시각 시 분							Apgar 점수(아기의 출생상태) ()					
분만 장소	병원() 조산소() 집()						분만 결과	0		1		2	
분만 보조자	의사() 조산원() 기타() 보건진료원() (이름:)							피부색	푸른색	분홍색	선홍색		
분만 경로	질분만() 제왕절개()							맥박	없음	100 이하	100 이상		
출혈량	약 시시							호흡	없음	불규칙	정상		
자궁 수축제	안줌() 줌()	약품용량		준 시간		※ Apgar 점수는 출생 5분 후 태아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조한 경우 기록		운동	늘어짐	소극적	적극적		
		반사작용						없음	강한자극에반응	울음			
6. 산후관리													
진찰 날짜	산후 기간별	체온 (℃)	혈압	유방	젖꼭지		자궁 크기	오로		회음	전신 상태	처리	다음 방문일
								색	냄새				
	첫주												
	둘째주												
유방: ① 부드러움 ② 울혈됨 젖꼭지: ① 정상 ② 동통 ③ 붉은색 ④ 갈라짐 자궁 크기: ① 배꼽 위 ② 배꼽 아래 ③ 만져지지 않음						오로:(색) ① 붉은색 ② 누르스름한 색 ③ 백색 (냄새) ① 안 난다 ② 나쁜 냄새 회음: ① 깨끗함 ② 부었을 ③ 붉고 단단함 전신상태: ① 수면불능 ② 변비 ③ 요정체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2013.1.23.>

보건진료소 근무일지

년 월 일		종 류	인원	본인부담금	거동불편	고령자
주요사항		국민건강보험				
		의 료 급 여				
		일 반				
		합 계				

영역	내 용	연인원	영역	내 용	연인원	
건강증진 관리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고혈압 관리	혈압측정	
	정신보건				상담교육 및 투약	
	재활			당뇨병 관리	혈당 측정	
	구강보건				상담교육 및 투약	
	전화상담			고지혈증 관리	콜레스테롤 측정	
	집단보건교육				환자 상담교육	
	결핵관리			비만 관리	BMI 측정	
	금연				비만 상담교육	
	절주(알코올 중독 관리)			치매관리 사업	대상자 등록	
	영양교육				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신체활동(운동실천지도)				치료관리비 지원	
	암 환자 관리				치매상담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 교육	
노인건강 관리		치매가족모임				
진찰 및 투약 관리		기타(물품지원 등)				
일차 진료	기타 검사		기 타			
	진료의뢰 및 환자이송					
	일반질환 상담교육					
	방문진료					

일차진료 현황

수진자	상 병 명	투약일수	본인 부담금	수진자	상 병 명	투약일수	본인 부담금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